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8(목) 10:00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92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5. 29.
- 라. 회부일자 : 2020. 5. 29.

2.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해당 조례상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실제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변경(안 제2조)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제6조의3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 2020. 4. 20. ~ 2020. 5. 11.(20일 이상)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
 -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
 -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

5. 검토의견

가. 개정 경위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용어를 조례에 적용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사용되도록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에서 현행 사용하는 「실제소득」을 상위법령의 용어를 따라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조문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4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 1.~8 생략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